

#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2000. 9. 23  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2000년 9월 6일 제출
- 회부 : 2000년 9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복지시설 위치를 현주소로 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조례설치 관계법령 및 복지시설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
  - 장애인복지법 “제38조”를 “제49조”로 변경(안 제1조)
  - 복지시설 주소를 충주시 호암동 “산 751-1번지”에서 산 “751-7번지”로 함(안 제2조제1항)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설치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관련조문 및 복지시설의 주소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